

공고 제2026-11호

북광주농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북광주농협에서 함께 근무할 성실하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직 군	직 종	채용인원	근무처	계약기간
기간제근로자	영업지원직(경제)	2명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1년 단위 (최장 2년)

2. 응시자격

- 기본 자격 : 거주지,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 북광주농협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사항 : 병역필자 또는 면제자(여성의 경우 해당 없음)
- 우대사항 : 컴퓨터·그래픽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접수기간,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08.20.(목) ~ 2026.08.24.(월)(오전 9시 ~ 오후 5시)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또는 본인 방문 접수(토·일 제외)
 - 전자우편 접수 시에는 아래 제출서류를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전자우편 주소 : nh601144-1@nonghyup.com)
 - 방문접수처 : 북광주농협 본점 2층 총무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하서로 563)

4. 전형절차·일정 및 합격자발표

구 분	내 용	비 고
1 차	서류확인	
2 차	면접시험	면접 대상자 개별통보
3 차	신체검사	면접 합격자에 한함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제출서류(소정양식은 홈페이지(<https://bkj.nonghyup.com>) 내 공지사항 참고)
- 가. 입사지원서(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각 1부
 - 나.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라. 자격증·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마. 지원자 서약서(소정양식) 1부
 - 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보훈관서 발행),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지원 시 제출, 나머지 서류는 면접시험 시 제출]

6.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사항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우리 농협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2026년 8월 28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우리 농협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농협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농협 팩스(062-571-0013)또는 이메일(nh601144-1@nonghyup.com)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농협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9월 11일까지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7. 부정청탁에 따른 불이익

○ 채용 청탁 등 부정한 행위 또는 연루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될 수 있으며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그 밖의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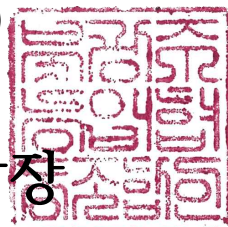
○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라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농협 내규상 결격사유에 해당 시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 북광주농협 총무과(☎ : 062-602-1603)

2026. 08. 20.

북광주농업협동조합장



※ 북광주농협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의 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 계약직직원으로 근무하고, 근로계약 해지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규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농 및 축산기술 지도, 농약판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만 70세 이상인 사람 가. 본문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채용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제4항, 제5항, 제107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 그 밖에 조합장이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